

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 안내

1

사업 개요

- (사업 목적)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
- (사업 내용) (2년형) 청년이 2년간 300만원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청년에게 만기 공제금 1,600만원과 이자 지급, (3년형)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3년 후 만기 공제금 3,000만원과 이자 지급

2

가입 대상 및 참여 요건

- (가입 대상) 기업 및 청년 가입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
 - ① (기업) 청년공제 가입(예정)일을 기준으로,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*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**(사업주 단위)으로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(비영리기업은 제외)
 - * 벤처지원업종,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
 - * 청년친화강소기업('17년 총1,118개소), 기타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채용한 기업
 - * (참여제외 업종) ▲소비·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공제 가입 제외업종, ▲3개월 미만 계절·일시적 인력수요 업체, ▲공공기관 및 공기업, ▲『초·중·고등교육법』상 학교
 - ② (청년) 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한 만15세~34세(군복무기간 비례 만 39세까지) 청년
 - * (2년형) ① 생애최초 취업자, ②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자, ③고용보험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
 - * (3년형) ① 생애최초 취업자, ②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자
(단, 2년형과 3년형 모두 고용보험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총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)
- (참여 요건) 정규직 채용(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음)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
 - * 재정지원일자리 중복참여 불가(희망근로사업, 디딤돌 일자리 사업,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)
 - *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중복 지원 가능

3

문의처

□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

운영기관명	담당자명	연락처	팩스	비고
(주)에스씨넷_영주	김현균 상담사	054-632-1949	054-632-1950	
상주상공회의소	조성하 과장	054-533-5842	054-533-5843	

*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: <http://www.work.go.kr/youngtomorrow>